

의안번호	제 248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월 일 (제 305 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변경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1년 11월 9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 248 호
----------	---------

제출연월일 : 2011년 11월 9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음성군 분뇨처리시설 확충과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부지를 지원하고 산림경영에 필요한 임야 확보를 위해 군유지와 재산권을 교환하고,
-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 사업계획은 청주시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변경되었고, 북부출장소 이전은 주민편의 도모와 북부권의 항구적인 종합청사건립을 위해 이전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처분

《공유재산 교환》

- 교환시기 : 2011. 11.~2011. 12
- 사업비 : 41,541천원
- 교환대상 공유재산(도⇔음성군)
 - 취득(군유지) : 2필지, 582,012㎡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582,012	1,047,616	
1	음성군 원남면 보천리 산 111-1	임야	492,954	887,312	
2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산 83-1	임야	89,058	160,304	

- 처분(도유지) : 4필지, 13,111㎡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13,111	1,006,075	
1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 431-47	답	4,969	273,295	게이트볼장
2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576	답	2,108	189,720	분뇨처리장
3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576-1	답	2,885	259,650	“
4	음성군 금왕읍 각회리 577	답	3,149	283,410	“

□ 제산의 취득 삭제

《장애인스포츠센터 신축계획 취소》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오동동 340-3 일원(밀레니엄타운 부지내)
- 사업규모
 - 토지매입 : 16,528㎡, 4,000백만원
 - 건물신축 : 2종 12,293㎡, 14,000백만원
 - 장애인스포츠센터 지하1/지상3층 9,917㎡
 - 근대5종훈련장 지하1/지상3층 2,376㎡
- 사업기간 : 2011. 1 ~ 2014.12(4년간)
- 사업비 : 18,000백만원(광특회계 4,200, 도비 13,800)

《북부출장소 이전·신축계획 취소》

- 위치 : 제천시 신월동 1108-1(농산사업소 종자보급과, 13,811㎡)
- 사업규모 : 지상 3층, 1,220㎡
- 사업기간 : 2011. 7 ~ 2012. 12
- 사업비 : 3,150백만원(도비 100%)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 제출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4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